

소수집단학생 지원 규정

제 정 2019.11.26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우송대학교 소수집단학생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소수집단학생이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우송대학교 재학생을 말한다.

1. 장애대학생
2. 외국인유학생
3. 다문화가족의 학생
4. 북한이탈주민(새터민)으로 등록된 학생
5. 기타 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생/그 밖에 관계 법령에 따라 소수집단으로 인정되는 학생

제2장 조직 및 지원체계

제3조(운영) 소수집단학생 지원의 체계적인 업무 추진을 위하여 소수집단학생지원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두고 담당부서를 지정한다.

제4조(지원범위) 소수집단학생에 대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을 할 수 있다.

1. 학습활동 지원
2. 대학생활 및 복지 관련 지원
3. 도우미(멘토) 지원
4. 기타 소수집단학생이 요청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5조(담당부서 및 지원체계) ① 업무에 따른 담당부서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장애학생 지원: 장애학생지원센터
2. 외국인유학생 : 국제교류원(처)의 국제교류팀과 유학생지원팀
3. 다문화가족 학생, 북한이탈주민(새터민) 학생 등의 학생지원: 학생팀

② 담당부서는 필요한 사항을 해당부서 및 학부(과)에 지원을 요청하고 지원에 따른 세부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제3장 운영위원회

제6조(구성) ① 소수집단학생 지원정책 및 운영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소수집단학생 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 위원장은 학생복지처장으로 하며, 위원회는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장애학생 지원에 관한 사항은 「장애학생지원센터 운영규정」에 따른다.

제7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소수집단학생 지원 및 운영계획 수립
2. 소수집단학생 지원 규정 및 운영세칙에 관한 사항
3. 소수집단학생 지원 결과 보고 및 환류에 관한 사항
4. 기타 소수집단학생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8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또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에 위원장이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 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권을 갖는다.

제9조(위원회의 사무) ① 위원회의 사무는 학생복지처 학생팀에서 관장하고 회의록을 작성하여 보관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경우 관계부서에 자료 제출 및 업무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0조(기타)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따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9년 11월 26일부터 시행한다.